

심 사 보 고 서

- 2023. 11. ~ 2024. 2.: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
- 2024. 3.: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(안) 작성
- 2024. 4.: 주민 열람공고
- 2024. 4.: 군의회 의견 청취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출 근거

- 본 안건은 군수 제출안건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내용

- (위 치)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일원
(해수면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)
- (면 적) 46,041,609㎡(564개소)
- (주요내용)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

[참고]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본방향

○ 정량적 검토

구 분	기준방향(검토 기준)	
기 개발지	▷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▷ 개발진흥지구 ▷ 군계획시설	▷ 지구단위계획구역 ▷ 취락지구
개발억제지 (법적제약 요소)	▷ 농업진흥지역 ▷ 별도관리지역 ▷ 문화재보호구역	▷ 보전산지(임업용·공익용) ▷ 자연공원구역
개발불능지 (자연요소)	▷ 생태자연도 1등급지 ▷ 경사도 20도 이상지역	▷ 임상도 5등급 이상 ▷ 하천구역, 해수면 등

○ 정성적 검토

- ▷ 주변 여건 및 토지이용 현황(인접한 토지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)
- ▷ 구역계 정형화(개발가용지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 등 구역계 포함여부 검토)

○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 내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,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조업소 및 공장 등의 입지유도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4. 19. 찬성의견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